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산업개발(합) 기계수리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염좌, 2) 제4~5요추 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91-621호 91. 12. 31. 기각)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김 ○ ○

주소 : 대천시 명천동

원 처 분 청 :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산업개발(합)

##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7. 30.자 청

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은 ○○산업개발(합)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12. 18.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염좌, 2)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한양대학 부속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7. 14.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애를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8급 2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현재 거동이 부자유스럽고 불편한 상태이므로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애가 장해등급 제8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11. 12. 김○○)
2. 원처분청 의견서(1991. 11. 16.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7. 22. 김○○)
4. 장해등급 사정서 사본(1991. 8. 30.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10. 10.)
6.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산업개발(합) 소속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12.18. 업무상 폐재되어 상병명 “1) 요추염좌, 2)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한양대학 부속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7. 14. 치료 종결되었는 바 한양대학 부속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요추 제4~5간에 대하여 척추궁절제술, 추간판 제거술 및 상흔유착에 대하여 신경해리술 등 시험 가료하였음. 요통과 이로 인한 요부 운동제한 있음. 운동 가능 범위 : 전굴 160도, 후굴 170도, 좌측굴 150도, 우측굴 160도, 우회전 25도, 좌회전 25도이며 하요부의 압통과 하지로 방사되는 통증 등 호소함. 엑스선 요추단순촬영에서 요추 망곡의 감퇴와 우측

과관절 이하에서 배굴력의 감퇴 있으며 우측 요추제5신경근 분포역에 둔감 있음. 병력으로 보아 가료후에도 신경증상의 호전됨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무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노무는 신경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며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1)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2) 척추 신경근증 요추, 3) 수술은 2회 시행함, 4) 요추부 운동범위 전굴 20도, 후굴 10도, 좌굴 30도, 우굴 20도, 우회전 25도, 좌회전 25도, 5) 우하지에 운동 지각신경의 단 마비도 인정됨”인 바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잔존장애는 요추 제4~5간에 척추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로 인한 요추부 운동장애 및 요통, 하요부 압통, 우하지 운동 지각신경의 단마비 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는 상태로써 운동장애의 경우 소견간에 차이는 있으나 장해등급 기준표 상의 “척추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라 함은 광범위한 압박골절 또는 척추 고정술 등에 기인하여 척추 운동기능 영역이 1/2이상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척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만을 시행한 청구인의 경우는 “단순 운동기능 장해”에 해당되고 이에 수반 내지 파생되는 신경증상은 별개의 장해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 장해등급 제8급 2호 “척추에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될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8급 2호 적용 처분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광업소 선산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2) 제4요추 횡돌기 골절, 3) 우술관절부 좌상, 외상성 혈종 및 염좌”가 발생한 경우

(91-567호 91. 11. 26. 취소)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엄 ○ ○

주소 : 보령군 미산면

원 처 분 청 :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소속 : ○○광업소

## 주 문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1. 7. 23.자 “엄○○”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9급 14호 적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6. 23.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등급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선산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6. 12.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2) 제4요추

횡돌기 골절, 3) 우술관절부 좌상, 외상성 혈종 및 염좌”로 세형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7. 10.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애를 “신경계 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인정하여 산재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9급 14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허리수술 후 허리를 구부리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상태이므로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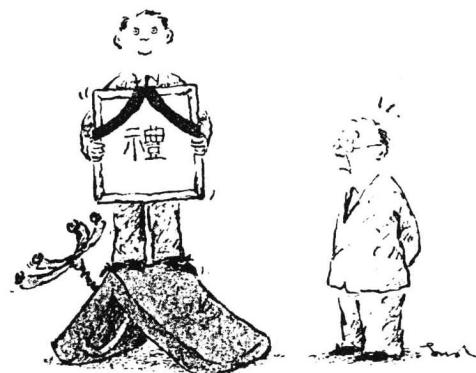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애가 장해등급 제9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10. 22. 엄○○)
2. 원처분청 의견서(1991. 10. 24.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7. 12. 엄○○)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7. 23.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9. 9.)
6. 소견서 사본(1991. 8. 15. 노동부 자문의)
7.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광업소 소속 선산부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6. 1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2) 제4요추 횡돌기골절, 3) 우슬관절부 좌상, 외상성 혈종 및 염좌”로 세형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7. 10. 치료 종결되었는 바 세형정형외과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제5요추 제1천추간 좌측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요통 및 우슬관절 동통, 비골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요부 운동장애가 남음. 요추부 운동범위 전굴 35도, 후굴 13도, 좌굴 15도, 우굴 15도, 좌회선 25도, 우회선 10도”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1) 제5요추 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2) 수술을 시행함, 3) 척추 운동범위 전굴 35도, 후굴 15도, 좌굴 15도, 우굴 15도, 좌회선 25도, 우회선 10도”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장애소견은 “요추간판탈출증 수

술후 상태로 신경기능 장해가 후유되어 종사할 노무가 상당정도 제한된 상태로 판단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때 청구인의 잔존장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좌측 후궁절제술후 요추부에 운동장애 및 요통, 비골통 등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로써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후궁절제술 등 수술적 가료를 받은 경우 연부 조직의 기질적 변화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후궁절제술후 요추부 운동범위 115도로 생리적 운동영역 220도의 1/4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신경증상 보다 상위등급 제8급 2호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9급 14호 적용 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전네는 고운말 돌아오는 밝은미소